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648호
----------	-------

2017. 07. 14.(금)
정 책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06월 26일
- 회부일자 : 2017년 06월 28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07월 12일

-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 제59조의10에 따라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후관리 등의 다양한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충청북도 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분사무소의 경우, 사무실 및 대표자가 있을 것)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95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017.8.~12.까지
- 주요사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법적 근거 및 동의안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 제59조의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 제36조의9, 제36조의1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43조의6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정함.

1)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생략)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간에게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단일 서비스 보다는 공공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른 효과는 경쟁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전달비용 절감,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전문성 제고, 서비스 수요에 대한 신속적 대응이라 할 수 있음.
-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인권상담이나 서비스 연계의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홍보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 피해 장애인에 대한 One-Stop 지원 절차 추진으로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장애인의 개별 상황에 맞춘 권리구제 전담기관으로서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 효율성, 창의성, 헌신성과 인권감수성등이 중요한 만큼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향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참 고 ①

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현황

(기준: 6.30일 현재)

시도별	위탁여부	위탁기관 (위탁기간)	선정방법	비고
서울	부	계획중		-
부산	부	계획중		-
대구	부	계획중		-
인천	여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17.6월~’20.6월)	공모	· 위탁체결(6.8.)
광주	부	계획중		-
대전	협약예정	’17.8월~’19.12월	공모	· 공고: 6.8.~6.26. · 접수: 6.27.~6.29.
울산	협약예정	’17.8월~’20.8월	공모	· 공고: 6.13.~6.23. · 접수: 6.23.~6.27.
세종	부	계획중		-
제주	부	계획중		-
경기	부	계획중		-
강원	협약예정	’17.8월~’19.12월	공모	· 공고·접수: 6.12~6.30.
충북	공고중	(위탁일로부터 3년간)	공모	· 공고·접수: 6.28.~7.11.
충남	부	계획중		-
전북	협약예정	(위탁일로부터 3년간)	공모	· 공고·접수: 6.22~6.26.
전남	부	계획중		-
경북	부	계획중		-
경남	여	(사)경남장애인권리옹호 네트워크 (’17.7월~’20.7월)	공모	-

※ 위탁 2(인천,경남), 협약예정 4(대전,울산,강원,전북), 공고중 1개 (충북),
위탁계획중 10(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제주,경기,충남,전남,경북)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

-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 ① 법 제59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변호사
6.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권익옹호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6조의8 및 제36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9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 ①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 ②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43

제출연월일 : 2017년 6월 2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위 치 : 충청북도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 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공공기관
 -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17년 95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 ※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계획(별첨)

3. 참고사항

가. 충청북도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계획

- 기관명칭 :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위 치 : 도내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칭 및 신고전화번호(☎1644-8295) 전국 공통 사용
- 이용대상 : 도내 등록장애인(94,688명)
- 사업기간 : ‘17. 6월부터 * 8월중 개소 예정
- 시설규모 : 사무실 및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 등 구비
- 사업비(‘17) : 95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연도별 변동가능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道 위촉 장애인권 관련 전문가(5~9명)로 ‘수탁기관선정단’ 구성, 심사선정
- 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17. 8. ~ ‘20. 7.(협약체결일부터 3년)
- 조직구성 : 1팀 4명
- 주요사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나. 관계법령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계획



보 건 복 지 국
노인장애인과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계획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을 위한 장애인 권익보호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강화에 기여코자 함

I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0(사후관리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운영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 별표5의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

II 현황 및 실태

1. 장애인 현황

①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단위:명)

계	지체	청각	지적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언어	자폐성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94,688	47,307	10,818	9,653	8,983	8,667	3,699	2,662	650	608	366	348	90	580	257
(100%)	(49.9%)	(11.4%)	(10.2%)	(9.5%)	(9.2%)	(3.9%)	(2.8%)	(0.7%)	(0.6%)	(0.4%)	(0.4%)	(0.1%)	(0.6%)	(0.3%)

② 시군별 장애인수

(단위:명)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94,688 (100%)	38,394 (40.5%)	12,775 (13.5%)	10,472 (11.1%)	3,191 (3.4%)	5,010 (5.3%)	4,592 (4.8%)	2,214 (2.3%)	4,068 (4.3%)	3,674 (3.9%)	7,440 (7.9%)	2,858 (3.0%)

③ 연도별 장애인수

(단위: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북인구수	1,519,587	1,527,478	1,549,528	1,562,903	1,565,628	1,572,732	1,578,933	1,583,952	1,591,625
장애인수	85,097 (5.6%)	90,958 (5.9%)	94,654 (6.1%)	94,855 (6.1%)	94,137 (6.0%)	93,563 (5.9%)	93,612 (5.9%)	93,536 (5.9%)	94,688 (5.9%)
전년대비 증감율	증6.6%	증6.9%	증4.1%	증0.2%	감0.7%	감0.6%	증0.05%	감0.08%	증1.23%

2. 장애인 학대피해 실태

-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무임금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사례 등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 지속 발생

《장애인 인권유린 주요사건》

- ▶ '16.7.14. 청주시 오창에서 2004년부터 무임금 강제 노역한 고모씨 발견
(19년전 행불되었으나 주민등록 유지, 지적장애인 가족(모·누나 장애))
- ▶ '14 전남 신안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수년간 강제 노역 발견
(염전업자 등 3명에게 지적장애인 상습폭행, 영리유인으로 실행 선고)

- 장애인 전수조사('16.7.20 ~ 8.31, 지적자폐정신 등록장애인 13,776명) 및 읍면동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소재불명자 및 학대의심사례 파악

《장애인 전수조사》

- ▶ 등록장애인 장기 미거주자(10명) 발견, 소재파악(8명) 및 수사의뢰(2명) 등 조치
- ▶ 인권침해사례 신고접수 20명(단순제보11, 무혐의·합의 등7, 형사처벌 등2)

- 지속 반복적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 안전망 구축시행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

III

설치·운영 개요

○ 기관명칭 :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위 치 : 도내 * 전국 17개 시도 설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칭 및 신고전화번호(☎1644-8295) 전국 공통 사용

○ 이용대상 : 도내 등록장애인(94,688명)

○ 사업기간 : ‘17. 6월부터 * 8월중 개소 예정

- 모집공고접수 : ‘17. 6. 28. ~ ’ 17. 7. 11.(2주간)

- 선정심사 : ‘17. 7월 네째주 예정

○ 시설규모 : 사무실 및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 등 구비

○ 사업비(‘17) : 95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道 위촉 장애인권 관련 전문가(5-9명)로 ‘수탁기관선정단’ 구성, 심사선정

○ 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17. 8. ~ ‘20. 7.(협약체결일부터 3년) * 재위탁 가능

○ 조직구성 : 1팀 4명

○ 주요사업(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IV 세부추진계획

1. 운영기관 공모

- 공고·접수기간 : 2017. 6. 28.(수) ~ 7. 11.(화)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공고문안 붙임)
- 신청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분사무소의 경우, 사무실 및 대표자가 있을 것)
 - ※ 기관운영을 위해 충분한 공간(설치기준 참조)을 확보하여야 함
- 신청접수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 ※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서류 제출이후 내용변경 및 반환 불가
- 신청서류
 - 사업신청 공문
 - 사업신청서
 - 사업제안서(사업목적, 주요업무내용·조직·인력 및 예산운용 방안 등)
 - 사업제안요약서
 - 서약서
 - 공모이행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기타 신청자격 및 사업수행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심사·선정

- 심사일시 : 2017. 7월 네째주 예정
- 심사방법 : 서면 및 ‘수탁기관선정단’ 대면심사
 - ※ PPT발표 및 질의응답(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가능)
- 선정심사
 - ‘수탁기관선정단’ 구성·심사
 - 심사위원의 최저·최고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기준점

수) 이상 기관중 최고점수 취득한 기관

- 동점일 경우 동점 기관을 대상으로 점수비중이 높은 심사항목(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타당성)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기관 선정
- 신청기관 1개소일 경우도 심사절차 진행
- 1순위 기관과 위수탁협약 체결 추진후, 결렬시 차순위 기관과 협의

⇒ 운영기관 공모에 1개 기관만 신청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선정단’ 심사 결과 적격(70점이상)이면 선정

‘수탁기관선정단’ 심사 결과 부적격(70점미만)이면 미선정 및 추후 재공모

《 ‘수탁기관선정단’ 구성 》

- ▶ 구성방법 :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道 임명·위촉
- ▶ 구성인원 : 5명 이상 9명 이내
- ▶ 위원자격 : 장애당사자 또는 그 부모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장애인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②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업무를 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③ 법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④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위원임기 : 운영기관 선정과 동시에 자동해산
-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

○ 심사기준

-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장애인권익옹호 관련업무 수행실적 및 향후 사업수행능력
-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여부 등

⇒ 기타 심사방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정은 ‘수탁기관선정단’에서 결정

○ 심사항목 : 100점 만점

분 야	항 목	배 점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 력 (50점)	장애인 인권 관련 사업추진 실적	15점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 완성을 위한 자부담 의향 등)	10점
	신청기관(법인)의 공익성	10점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10점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기여 정도	5점
사업계획 타당성 (4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15점
	사무실 공간의 적정성 (설치기준 면적 확보 등)	10점
	예산편성 적절성	10점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	5점
기타사항 (10점)	기관 운영을 위한 차량 확보 여부	5점
	기관 접근성 및 편의시설 설치 여부	5점

3. 인권옹호기관 위탁 · 운영

○ 위탁기간 :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

* 도는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가능, 수탁기관은 위탁시 확정된 사업계획서·조직·인력 및 예산운용 방안 등의 내용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변경이 불가능

○ 위탁갱신 : ‘수탁기관선정단’ 평가의결을 거쳐 위탁갱신 여부 결정,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한 수탁기관 결정 가능

○ 위탁해지

- 보조금을 지정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법령규정,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거나 도지사가 위탁을 해지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할 중대하고 불가피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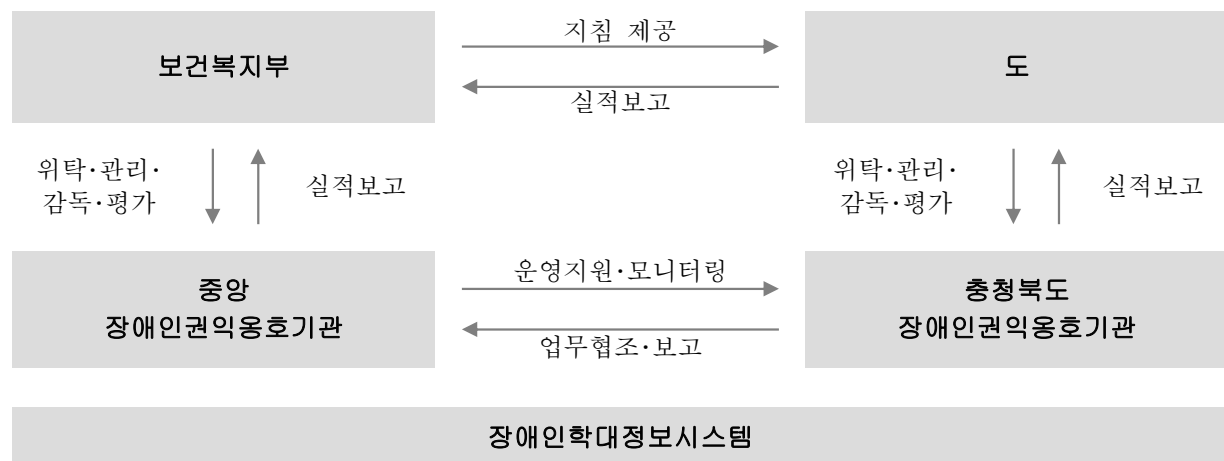
○ 사무공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구 분	시 설 기 준
사무실	○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 긴급전화 설치 및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설치
상담실	○ 16.5㎡ 이상의 규모의 독립된 공간 확보 ○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상담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갖춘 충분한 공간을 확보 ○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비품 확보
교육실	○ 59.0㎡ 이상의 교육 전용공간 확보 ○ 교육 실시에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 확보
대기실	○ 9.5㎡ 이상 규모의 피해장애인 및 동행자, 수어통역사 등을 위한 대기실 설치

○ 운영체제

- 조직구성(권고안) : 4명(기관장 1, 팀장 1, 직원 2)
 - ※ 조직의 규모 및 구성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기 관 장 : 상근 의무(겸직금지). 다만, 팀장 역할을 동시 수행 가능
- 인력채용 : 수탁기관은 공정한 절차로 인력채용 후 도의 승인을 받아야함

《 업무수행절차 》



- 인력구성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9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 「정신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 변호사
-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종사자 자격요건 》

구 분	자 격 요 건
기관장	-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이하 ‘관련 자격증’이라 함)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팀장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변호사로서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사원 (상담 등)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사원 (운영지원)	- 운영지원 또는 전산통계 관리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기관 종사 경력자 우대

○ 보수기준

- 충청북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수탁기관 자부담 가능

○ 기관역할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응급보호, 의료기관 인도)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 지원
-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내용의 기록, 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협업 실시
-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 피해장애인 쉼터,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등
-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법률구조공단·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등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등

[장애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일반국민, 신고의무자, 관련기관 종사자 등 대상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 및 지역옹호기관 홍보

[중앙옹호기관에 대한 보고 및 업무협력]

- 장애인학대 신고·현장조사·응급조치 현황 처리 결과 보고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현황 및 결과보고
- 월별 주요 활동 내용 보고
- 홍보 및 교육 실적 보고
- 기타 중앙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수행

※ “가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및 도에서 규정한 사업

V

향후계획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6. 28.(수)~7. 11.(화)
- ‘수탁기관선정단’ 구성·심사 : 7월 네째주 예정
- 사무실 조성 및 직원 채용(수탁기관) : 7 ~ 8월
- 道-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협약 : 8월중(협약체결일부터 3년)
-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 : 8월 이후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7.1.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① 법 제59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 운영시간
3. 상담자 관리 방법
4. 재무·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 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본조신설 2016.12.30.]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